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직위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직무내용
감사담당관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개방형5호)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자체감사 실시 및 계획수립 시행○ 본청, 소속기관, 소관단체 및 그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 공직자 재산 등록,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민원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 평가에 관한 사항○ 주요 정책 집행, 계약 등의 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환경순찰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 기타 부정비리의 예방을 위한 활동 등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 :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중 하나의 요건 이상을 충족한 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대통령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행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임용신분 및 보수수준

□ 임용신분

- 민간인의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당해 직위(개방형 5호)에 보임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공모 과정을 거쳐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당해 직위 보임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주 5일,월~금)

□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개방형5호의 연봉한계액]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개방형(5호)	93,801천원	53,316천원

※ 연봉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시험 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일	합격자발표	임용예정일
2026.10.27.(화) ~2026.11.06.(금)	2026.11.09.(월) ~2026.11.13.(금)	2026.11.18.(수) 예정	2026.11.25.(수) 예정	2026. 12월 중	2027. 1월 중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1. 09.(월) ~ 11. 13.(금) 《 5일간, 09:00~18:00 》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수수료 반드시 함께 송부
- ▶ **등기 발송 전** 서류를 스캔하여 채용 담당자 이메일(kje130@ydp.go.kr) 송부
- ▶ **등기 발송 후** 채용 담당자(☎02-2670-3324)에게 우편접수 사실 반드시 고지
- ▶ 우편봉투 겉면에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원서' 표시

- 접수장소: 영등포구청 총무과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영등포구청 총무과 인사팀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7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을 심사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필수사항)

○ 응시원서 1부(첨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10,000원) :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원서뒷면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
- ※ 원서접수처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거나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이력서 1부(첨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 제4호 서식)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 제6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첨부 제7호 서식), 주민등록초본 제출(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서류전형 자격요건 확인서 1부(첨부 제9호 서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에는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별도서식 없음)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기술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제8호 서식) 1부

○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증빙자료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문에 기재된 기일 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단, 최종합격자는 제외하며 기일 내 청구하지 않을 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시험응시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용청탁은 금지되며, 청탁을 한 응시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또는 본인 최종 점수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7일 이상)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청 총무과 (☎02-2670-3324) —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